

2020 - 1349

() (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52호(2015.2.26)로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 결정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
2020년 10월 22일

금 천 구 청 장

1. 목적 :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

2. 열람내용

가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③	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	시흥동 996-3번지 일대	27,375.0	-	27,375.0	
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면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준공업지역	27,375.0	-	27,375.0	100.0	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■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조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라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마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3.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: 금천구청 도시계획과(11층) [문의사항: ☎02)2627-2062]

다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)

4. 본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